

'93행정사무감사계획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93행정사무감사계획

■ 감사의 목적

각종 안전 및 1994년도 예산안 심사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군정 전반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켜 나가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집행의 적정화와 능률화를 통한 가일층의 대군민 복리증진에 직결되도록 하려는 것임.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기간

- 3일간('93. 12. 7~12. 9)

■ 감사장소

- 서산군의회 소회의실(3층)

■ 감사반 편성

- 1개반 8명

위원장	간사	위원	사무보조직원
禹相勳(인지) (1인)	朴瑛教(팔봉) (1인)	金在經(대산) 金振五(운산) 徐慶源(부석) 柳奎一(음암) 李炳燮(혜미) 李昌培(성연) (6인)	사무과장 方景泰 전문위원 曹富煥 의사계장 金榮洙 지방행정주사보 朴康雄 " 朱成煥 (5인)

■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한 자치단체 사무의 전반
 - 고유 사무
 - 단체 위임 사무
 - ※ 기관 위임 사무는 제외
- '93년도 집행된 행정사무를 중점 실시

■ 감사대상기관

-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당해자치단체(군본청)
- 자치단체 소속행정기관-사업소(보건소)
- 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각 읍·면

■ 일정별 감사 소관부서

년 월 일 시	소 관 부 서	비 고
'93. 12. 7(화) 10 : 00	○ 기 획 실 소관 ○ 사회진흥과 소관 ○ 재 무 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축 산 과 소관 ○ 건 설 과 소관 ○ 농촌지도소 소관 (7)	
'93. 12. 8(수) 10 : 00	○ 문화공보실 소관 ○ 사 회 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산 립 과 소관 ○ 수 산 과 소관 ○ 도 시 과 소관 ○ 민방위과 소관 (7)	
'93. 12. 9(목) 10 : 00	○ 내 무 과 소관 ○ 지 적 과 소관 ○ 가정복지과 소관 ○ 산 업 과 소관 ○ 보 건 소 소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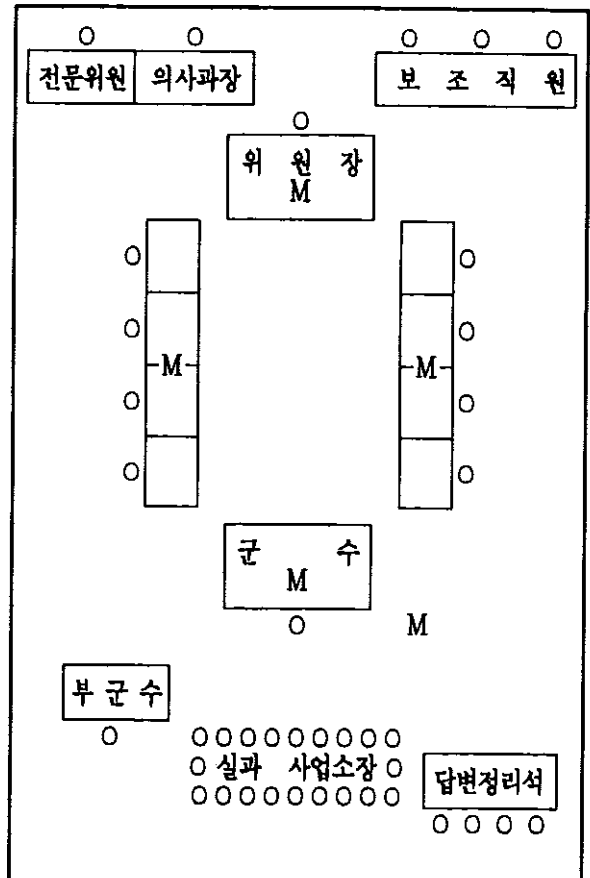
■ 감사방법

- 회의체 감사
-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질문, 응답
- 현지 확인 병행

■ 감사의 절차

- 감사실시 선언
- 집회사항 보고
- 위원장 인사
- 군수 인사
-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 질문, 응답
- 출석 증언, 진술
- 현지 확인
- 감사 결과 강평
- 감사 종료 선언

■ 감사장 배치도



'93. 12. 24

'93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실시 개요

■ 감사의 목적

각종 안전 및 1994년도 예산안 심사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군정 전반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켜 나가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집행의 적정화와 능률화를 통한 가일층의 대군민 복리증진에 직결되도록 하려는 것임.

■ 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기간

- 3일간('93. 12. 7~12. 9)
 - 1일차('93. 12. 7) : 기획실, 사회진흥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축산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소관 (7)
 - 2일차('93. 12. 8) : 문화공보실, 사회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도시과, 민방위과 소관 (7)
 - 3일차('93. 12. 9) : 내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보건소 소관 (7)

■ 감사장소

- 서산군의회 소회의실 (3층)

■ 감사반 편성

- 1개반, 8명

■ 실시경과

- 특별위원회 구성 : '93. 11. 26(제1차 본회의)
-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감사계획작성 및 의결 : '93. 11. 27

위원장	간사	위원	사무보조직원
禹相勳(인지) (1인)	朴瑛敎(광봉) (1인)	金在經(대산) 金振五(운산) 徐慶源(부석) 柳奎一(음암) 李炳燮(해미) 李昌培(성연) (6인)	사무과 장方景泰 전문위원 曹富煥 의사계 장金榮洙 지방행정주사보朴康雄 朱成煥 (5인)

- 감사계획승인 : '93. 11. 30(제3차 본회의)
- 감사실시 : '93. 12. 7~12. 9

2. 총 평

- 감사위원들은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의 소지등만을 생각하고 현상태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안 및 대책 강구 요청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고
- 수감자인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입장도 고려했지만 관련 법규등 규정에 바탕을 두고 처리함으로써, 그 결과가 현장과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 사항이 많았음
- 현장 중심의 확인 행정 집행등 군민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함

3.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기획실 소관

- 각종 관변 사회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군민과의 화합과 결속을 위한 목적에 부응되도록 하는등 지방 재정 운영의 본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예비비지출은 정확한 소요 판단등에 적정을 기할 것이며, 가급적 당초 예산에 계상 조치하여 예비비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집행하기 바람.
- 행정 소송은 행정 처리의 시기일실, 공정성과 형평성 미흡, 안일한 추리등 예방 행정의 소홀에서 빚어지는 것으로 대부분 군민과의 쟁송으로써 군민화합차원과 거리를 두지 않도록 하기 바람.

■ 문화공보실 소관

- 군정의 움직임을 군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동참과 성원등 결속을 강화하고 행정 집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기법의 발굴과 군정 홍보 요원을 최대한 활용하는등 홍보 방안을 모색 시행하기 바람.
- 서성대상은 군민 모두가 존경하고 군민의 표상이 되는 군민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포상으로 이의 후보자 추천시 대상자의 공적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추천하고 심사되어 시상함으로써 군민의 위상

을 추락시킴은 물론, 본 포상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 3개 시. 군으로의 행정구역 개편이전 나무, 새, 꽃 등 군 표상물을 변경 지정치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고유적인 것으로 변경 지정하기 바람.

■ 내무과 소관

- 각종 유기한 민원은 대부분 군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민원으로써, 처리기한에 국한하지 말고 접수후, 접수시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바람.

■ 사회진흥과 소관

- 외지인을 상대로 하여 육성하고 있는 도지정 체육 종목 (정구팀)은 장래 꽃나무육성 차원과 동떨어진 것으로써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 지향적인 종목선정 및 운영 방법등 자체 실정에 맞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우도, 분점도를 운항하는 행정 여객선이 행정 지도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아 관리가 허술하다고 판단되는바 평상시, 유사시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지도 관리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각종 도로포장등 콘크리트재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가급적 결빙기를 피하여 시공토록 지도 감독함으로써, 부실공사로 인한 재시공등 군비의 재투자로 예산을 낭비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 흑선선 도로에 전주가 설치되어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조속 이설토록 조치하고, 향후 버스노선의 확.포장공사 발주전 사업대상지의 전주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공토록 하여 완공과 동시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재무과 소관

- 도축세는 도축의 실적에 따라 과징되는 군세로써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의회에서 승인 의결한 교육위원회 소유 대지와 고북중학교 운동장 부지와의 공유재산 교환을 조속 해결조치하고, 군유 건물내 서산시 새마을지회, 방통대 협의회 사무실을 조속 이전토록 하는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지적과 소관

- 허가 및 신고된 대지에 건축물을 증축 또는 신축을 위한 지적 경계 측량 의뢰시 기초점에 의거 정확한 측량이 되도록 하여 대산 삼호 아파트 건축선 초과와 같은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 환경보호과 소관

- 허가당시 해미면 소재지에 위치되어야 할 분뇨대행업이 서산시에 사무실을 설치수년간 운영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업자로 하여금 허가 조건에 부한 규정을 준수토록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 조치하기 바람.
- 고북 도계장의 오 폐수 처리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음으로써 심함 악취등 주변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함은 물론 이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가정복지과 소관

- 팔봉 금학리 소재 사설공원묘지 설치 허가와 관련한 민원사항은 법규등 규정 만으로의 적격 처리를 절대 지양하고 군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등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처리하여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 산업과 소관

- 농지 및 임야등(공부상 지목, 이용상태의 지목)을 타지목으로의 전용을 위한

허가 신청 민원은 관련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산림훼손 허가의 구분 여부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으로 충분한 협의등을 통해 구분 처리하는등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바람.

- 농촌의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반값 공급의 대상자 선정시 경작 규모, 기보 유 여부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상 농가를 엄선하여 실효성있게 추진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기 바람.

■ 지역경제과 소관

- 성연과 고북에 유치된 농공단지에 업체가 입주되지 않아 군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바 조속 업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은 승인만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승인이 취소됨으로써 원상복구등 사후 관리 조치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지도와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석 미주만 공사), 허가된 목적이 아닌 타 목적으로 전용(음압 블럭공장)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허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무게와 가스 용량을 수시 확인 지도 단속하여 소비자인

군민이 용량 미달 공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산림과 소관

- 산림훼손 허가로 부지를 확보한 중소기업체가 허가 목적외로의 전환 가능성(음압 농기계 수리센터)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 지도 점검토록 하기 바람.
- 농지 및 임야등(공부상 지목, 이용상태의 지목)을 타지목으로의 전용을 위한 전용 허가 신청 민원은 관련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산림훼손 허가의 구분 여부에 대하여 관련 부서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으로 충분한 협의등을 통하여 처리하는등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바람.

■ 수산과 소관

- 면허된 양식업자(팔봉 호리 축제식 새우 양식장)가 양식업 운영만을 생각한 나머지 홍차박이라는 약제를 사용 양식종류가 아닌 타종의 수산생물(망둥어, 전어등)을 없애는 사례가 있는바, 당해 지역주민의 어업 소득을 피하게 함은 물론 수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으로의 철저한 현지 지도점검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고흥저수지에 가두리 양식 면허로 수질

이 오염되어 있는바 수면허자에 대한 이해 설득으로 조기에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기 바람.

- 대산 독곶지구내 구획어업을 목적으로 항목을 세워 놓았는데, 이는 불법 시설물로써 조속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기 바람.

■ 건설과 소관

- 기 조성된 공영개발택지 (음압 도당지구, 지곡 화천지구)에 대한 입체적인 홍보로 조속히 매각하여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군도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전 승락을 받은 후 사업을 적기에 착수, 준공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을 제고하기 바람.
- 도로보수용 덤프차량, 포크레인등 중기를 최대한 활용 도로보수 유지관리가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직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도시과 소관

- 대산 삼호 A.P.T 건축선 초과, 운산, 고북 빌라의 위법 및 불법 건축물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는 건축민원으로써 조기에 수습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 서산과 대산을 연결하는 29호선 국도상 구간내 성연 일람리에 자동차 정비 공장

건립을 위한 건축이 시공되고 있는데 교통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바, 현재 시공중인 신설 도로가 이용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토록 유도하는 등 교통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하여 승인한 미주만 공장 건축물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승인 취소된바 건축물의 철거등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기 바람.

■ 농촌지도소 소관

- 농민들이 포장에서의 농기계 고장으로 불편이 많은데, 농기계 순회수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작업의 시간적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 보건소 소관

- 읍.면 단위 보건지소 및 오지 지역의 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수진자가 한동안 기다리게 되는등 적시에 신속한 진료가 안되고 있어 민원을 사고 있는바, 친절봉사 자세로의 근무 태세가 확립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4. 건 의 사 항

■ 문화공보실 소관

- 의회에서 부기를 조정 삭감조치하여 승인된 예산 (신문 구독료 집행)은 가급적 산출 근기에 의거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의 한도내에서 집행토록 요망함.

■ 내무과 소관

- 5급 승진에의 시험은 대상자를 최대의 배수 추천, 응시토록하여 소속 공무원 자체 승진으로 사기를 북돋아 행정의 능률을 꾀할 수 있도록 요망함.

■ 사회과 소관

- 거액의 예산 투자 계획으로 대규모 사업의 책정 계획 수립(대산근로자 복지회관신축)시 사전 의회의 의견등을 수립 종합하고, 심층 분석후 시행토록 하여 예산심의등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요망함.

■ 민방위과 소관

- 평상시와 유사시를 대비한 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 교육 훈련시 활용하는 강사는 식견과 덕망을 겸비한 인사로 엄선 위촉하여 대원들로 하여금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재 및 강의 내용에 의한 기대효과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있는 교육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함.